

국회운영위원회

우 150-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1 / 전화 02)788-2900 / 전송 02)788-3351
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이 계 인 담당자 김 성 대

문서번호 9700005-2002-4

시행일자 2002. 1. 8 .

수신 수신처 참조

참조

보존기간		위 원 장	
공개여부		이 성 대 /	
수석전문위원	wb		
심 의 관	국		
조 사 관	인		
기 안 자			
심 사 자		심 사 일	

제목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

제226회국회(임시회)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(2002. 1. 8)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제안합니다.

붙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50부. 끝.

국회운영위원장

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2. 1.

제안자 : 국회운영위원장

주 문

- 가.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, 정당법,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·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내에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수는 17인으로 한다.
- 다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제안이유

「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」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하기 위한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」가 2001년 12월 31일자로 그 활동기한을 종료함에 따라, 여야 합의로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」를 다시 구성하여 정치관계법을 계속 심사하려는 것임.

서 면 동 의 서

수신 국회운영위원장

제목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면동의

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.

첨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부. 끝.

2002년 1월 8일

동 의 자



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2. 1.

제안자 : 국회운영위원장

주 문

- 가.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, 정당법,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·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내에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수는 17인으로 한다.
- 다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제안이유

「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」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하기 위한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」가 2001년 12월 31일자로 그 활동기한을 종료함에 따라, 여야 합의로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」를 다시 구성하여 정치관계법을 계속 심사하려는 것임.

서 면 동 의 서

수신 국회운영위원장

제목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면동의

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.

첨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부. 끝.

2002년 1월 8일

동 의 자 

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2. 1.

제안자 : 국회운영위원장

주 문

- 가.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, 정당법,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·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내에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수는 17인으로 한다.
- 다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제안이유

「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」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하기 위한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」가 2001년 12월 31일자로 그 활동기한을 종료함에 따라, 여야 합의로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」를 다시 구성하여 정치관계법을 계속 심사하려는 것임.